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259

발의연월일: 2025. 2. 18.

발 의 자: 조은희 • 이인선 • 서일준

이만희 • 박정하 • 신성범

김용태 · 강명구 · 서천호

김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는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제3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기관등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조(「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3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5조(「온천법」의 개정)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를 "제10조"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경우 다음 각호의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한다)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종전의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인· 허가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 제6조(「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8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도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8조(「주민등록법」의 개정)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의 제목 "(이의신청 등)"을 "(주민등록 등에 대한 이의신청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 제9조(「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 주한미 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제1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를 "사업승인권자가인·허가등의"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 ②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수 있다.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 2.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 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가 되었을 것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 나.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 지수급계획의 수립
 -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 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사. 그 밖에 사업승인권자가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

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 제10조(「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의 개정)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 제11조(「행정사법」의 개정)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수리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의13제1항 중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1조제2항, 제11조의2"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행정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특례) 제25조의10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및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3조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3조제1항 중 "5년"은 "5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천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행정사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같은 법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 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 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 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 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 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 한다. 이 경우 공개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는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야 한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③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에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 이의가 있는 제3자는 제2항에 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어야 한다.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 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은 제3항에 따른 <신 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 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및 제4 항을 준용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
허가 등의 의제) ①・② (생	허가 등의 의제)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u>지를 준용한다.</u>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
<u>청)</u> ① ~ ④ (생 략)	<u>청 특례)</u> ① ~ ④ (현행과 같
	유)
<u><신 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u>제36조에 따른다.</u>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등)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	⑤
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	
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준용
	<u>한다.</u>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생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	②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
<u>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u>	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
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	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
하여야 한다.	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u>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u>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
<u>행강제금의</u> 금액·부과사유·	<u>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u>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 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 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 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 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 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 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 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지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혀 했 개 정 안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 ·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 ·허가등 의제) ① 제10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 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 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허가 · 신고 · 결정 · 승인 · 지정 ·신고·결정·승인·지정·인 ·인가·면허·협의·해제 등 가・면허・협의・해제 등(이하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 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하여 시 · 도지사가 인 · 허가등 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 인ㆍ허가등-----가 된 것으로 본다. 1. ~ 29. (현행과 같음) 1. ~ 29. (생략)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 <삭 제> 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 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 ⑥ (생 략)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 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하여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u>②</u>
<u><후단 삭제></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 허가등 의제) ① <u>제16조에 따</u> 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경 우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인·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 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삭 제>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
 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 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u>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u> <u>본다.</u>

1. ~ 4. (현행과 같음) <<u>삭</u> 제>

 ③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	
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	
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	
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	미리 협의한 사항에
<u>여</u>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	<u>대해서는</u>
지정・승인・협의・신고・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	
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	
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	
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34. (생 략)	1. ~ 3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 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 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 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	
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 인	
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u>한다)</u> 을	한다)에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	관하여 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
른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 36. (생 략)	1. ~ 3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3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	
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u>한다</u> .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이용중지 등)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취수 ② -----량 산정방법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 다. <후단 신설>

③ ~ ⑤ (생 략)

<u>⑤</u> 제	1항년	부터 제	<u> 4항까</u>	기	<u> 게서</u>	규
<u>정한</u>	사항	- 외에	허가	등	의저]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	하여	는
「행기	정기분	보법」	제24:	조 ^년	부터	제
		를 준용				

제381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제381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①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도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 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	3	제21조(주민등록 등에 대한 이의
(생 략)				<u>신청 특례)</u>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	6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	
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u>.</u>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	1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u>제29</u>	<u>체29</u>
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	조제2항
승인을 받은 때에는 3년) 이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	
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허가・인가・지정・승인・	
협의 • 신고 • 해제 • 결정 • 동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	
다) 중 <u>제2항에 따라</u> 관계 중	<u>사업승인권자가 인·허</u>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 에 <u>대하여는</u>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29. (생략)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가등의
<u>대해서는</u>

- 1. ~ 29. (현행과 같음)
- ②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 2.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
 업 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
 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가 되었을
 건
 - <u>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u> 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 나.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 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ㅣ 제22 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 정
- 바. 「관광진흥법」 제52조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단지의 지정
- 사. 그 밖에 사업승인권자가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 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인 정한 경우로서 사업수행 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 | <삭 제>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 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 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 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 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 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 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ᅟ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 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 른 개발계획의 수립
-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 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

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 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른 물류단지의 지정

-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기본적인 요건이 협의되어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 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 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③ 제11조에 따른	- —
	- —
제1항	제
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	- —
	-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개	
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 인	
가・승인・해제・결정・신고수	
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	한다)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
·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u>수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u>
것으로 본다.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
	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② 관할 시장・군수는 제8조에	②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	
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	
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u>사전에</u> 협의하여	<u>미리</u>
ો ગાન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 26조까지에 따른다. 면 지체 없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 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 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 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① · 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사업무신	<u><</u> 삭 제>
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不服)의 이	
유를 밝혀 시장등에게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이	<u><삭 제></u>
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	
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u>한다.</u>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u><</u> 삭 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한다.	
<u><신 설></u>	제11조의2(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
	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
	고 수리 거부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수리 거부 통지를 받
	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
	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25조의13(준용규정) ① 행정사 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1 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 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항 부터 제6항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2조부터 제 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제32조(업무의 정지) ①・② (생 제32조(업무의 정지) ①・② (현 략)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삭 제> 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라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 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 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그 결과 통지 기간은 연장 할 수 없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 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 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다.

에25조의13(준용규정) (l)
제11
조제2항, 제11조의2

② (현행과 같음)

행과 같음)

 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신 설>

제32조의2(행정제재처분의 제척 기간 특례) 제25조의10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및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3조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3조제1항 중 "5년"은 "5년(업무정지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